

2021년도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점검 -

2021. 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감 사 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및 범위	1
3. 감사기간 및 인원	1
4. 감사실시 과정	2
5. 감사 중점사항	4
II. 감사결과	5
1. 총평	5
2. 지적사항 총괄	5
3. 지적사항 요약	5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8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8
2. 모범사례 일람표	8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9

1.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임직원을 보호하고 최고수준의 안전활동 제고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칙」 및 매년 수립되는 「안전경영책임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안전·보건 관련 건강검진·교육·점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 업무 수행의 지침이 되는 「안전보건관리규칙」은 고용노동부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대상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 및 ●●●●● 담당자와 부서장으로 관련 규정·지침, 안전 관리·교육, 건강검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기간 및 인원

본 감사는 2021. 7. 1.부터 시작된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2021. 7. 7.부터 같은 해 7. 13.까지 5일 간의 예비조사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반장 1명, 감사인 4명(준감사인 및 교차감사인 각 1명 포함)을 투입하여 2021. 7. 15.부터 같은 해 7. 21.까지 5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내·외부 감사인 검토과정을 거쳐, 2021. 9. 13. 상임감사가 최종 확정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서는 평가관리원의 안전보건 관리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취하였다.

가. 예비조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지감사 수행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2021. 7. 7.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으며, 감사인 별로 제척·회피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주요활동은 감사인 별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실지감사를 위한 관련 증빙 수집, 감사대상 및 대상자와 감사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 실지감사

착안사항 발굴 회의와 예비조사를 거쳐 2021. 7. 15.부터 같은 해 7. 21.까지 5일간 감사인원 5명(준감사인 및 교차감사인 각 1명 포함)을 투입하여 감사 중점사항에 기반 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실시 중에는 안전보건 관련 상위 규정 분석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처분요구사항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마감회의 및 내부변호인 제도 안내

감사 종료 후에는 조치요구사항과 관련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 감사 마감회의(강평)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와 주요 문제점, 개별적인 지적사항 등을 설명하고, 업무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감사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감사대상자의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감사의 신뢰성과 감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대상자에게 필요에 따라 내부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라. 윤리자가진단 및 제3자 검증 시행

감사 종료 후, 감사인은 윤리 자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에 참여 하지 않은 감사인(제3자)이 피감부서장 및 피감인에게 접촉하여 감사 활동 중 감사인의 비위행위 등 윤리준수 적절성을 검토 후 제3자 검증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개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객관성 및 윤리기준을 강화코자 노력하였다.

마. 감사실무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감사반 전원, 감사부서 직원이 참석하여 감사처분 요구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바. 감사심의위원회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요구(안)에 대해 내·외부감사인 검토를 진행하고, 제3자 검증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5. 감사 중점사항

이번 특정감사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에 대한 단순 지적보다는 컨설팅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내부통제 위험요소에 기반하여 [표1]와 같이 사전조사 및 예비조사 기간 동안 검토한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전략적 감사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감사규정 및 감사원의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준수 등을 통해 원칙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였다.

[표 1] 감사 중점 추진사항

연번	중점 추진방향
1	안전보건 관련 상위 법·지침과의 수행 업무 적정성 검토
2	직원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후속관리 적정성
4	관리운영직(운영직)수행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 * 관리운영직(운영직[시설관리, 미화, 경비, 운전, 건축]) 설문조사 실시 병행
4	안전보건관리 업무 모범사례 발굴

II. 감사결과

1. 총평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업무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는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기여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백만원]

합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5	-	-	-	-	- (-)	-	-	- (-)	-	-	1	2	1	-	-	1

3. 지적사항 요약

【처분요구사항】

1)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필요

안전·보건업무 수행지침이 되는 「안전보건관리규칙」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총괄관리감독자 선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축·운영, 비상사태 대비 계획·훈련 대상범위 일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추가 및 보완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개선)

2)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필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¹⁾’와 평가관리원 ‘임직원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3년 평균 평가관리원 임직원의 이상소견자²⁾ 비율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보다 6.6%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어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수립된 ‘KEIT 임직원 건강관리 체계적 지원계획’내 ‘유질환자 적극적 지원사업’ 등 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이행하여 직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권고)

3) 관리운영직(시설/경비/미화/운전) 대상 안전보건 교육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 필요

청사 시설관리, 미화, 경비, 건축 및 운전을 담당하는 관리운영직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근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직무별 안전보건교육 참여율이 상이하고 대상과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 과목 및 횟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권고)

아울러, 원내에 있는 지하 비트실, 특고압, 수배전 시설 등을 위험한 장소 및 설비로 응답하였으며 차량내 소화장비 및 작업장내 상비약(의료상자) 배치 등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안전보건 관련 제안 의견으로 외부 전

1)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전국 사업장에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근로자 직업병 예방 등 산업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보고서

2)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상 소견이 있는 자를 이상소견자라고 하며 세부적으로 요관찰자, 유소견자로 분류됨

문교육 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실시, 평가원 출구 도로의 안전 문제 등을 제시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조치 필요성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통보)

【모범사례】

1)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우수’ 달성에 기여

평가관리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실시된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안전경영체계 구축,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안전문화 확산, 사망사고 12년 연속 “0건” 달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A등급)을 받았다. 이에 ○○○○○○ ▼▼▼ ▼◆◆은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원내 안전 분야 전문위원과 상시 협의 및 자문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대응하였고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등 안전보건 관련 24건의 원내 규정 제·개정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등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처리부서
「안전보건 관리규칙」 개정 필요	1	○ 안전·보건업무 수행지침이 되는 「안전보건관리규칙」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명시한 총괄관리 감독자 선임, 안전보건 협의체 구축·운영 등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개선	2021. 9.	2021. 11. (2개월)	○○○○○ ○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필요	2	○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자에 대하여 기수립된 'KEIT 임직원 건강관리 체계적 지원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계획 이행 필요	권고	2021. 9.	2021. 11. (2개월)	●●●●●
관리운영직(시설/ 경비/미화/운전) 대상 안전보건 교육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 필요	3	○ 시설관리, 미화, 경비, 건축 및 운전을 담당 하는 관리운영직을 대상 안전보건 관련 교육 과목 및 횟수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필요	권고	2021. 9.	2021. 11. (2개월)	○○○○○ ○
	4	○ 시설관리 등 관리운영직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안전 보건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검토를 통해 후속조치 필요	통보	2021. 9.	2021. 11. (2개월)	○○○○○ ○

2. 모범사례 일람표

제목	순번	관계부서	성명	공적요약	기대효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우수' 달성에 기여	1	○○○○○ ○	▼▼▼ ◆◆	○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원내 안전 분야 전문위원과 상시 협의 및 자문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안 전활동 수준평가 대응하여 우수 (A등급)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등 안전 보건 관련 24건의 원내 규정 제·개정 업무를 맡아서 수행	○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 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일련번호	1	감사자	◎●●, □● (준감사인)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처분요구일	2021.09.	회신 기한일	2021.11. (통보일로부터 2개월)

개 선

제 목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필요

소 관 부 서 ☆☆☆☆☆☆☆☆☆단(○○○○○○○)

조 치 부 서 ☆☆☆☆☆☆☆☆☆단(○○○○○○○)

내 용

1. 업무 개요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 제공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관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인

○○○○○○ 신설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점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필요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평가관리원은 「안전보건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범위와 추진절차 및 체계 등 법령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원규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행하여 평가관리원 임직원과 관계수급업체 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벌(賞罰), 제안제도, 위험성평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0년 8월 31일 「안전보건관리규칙」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표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한 결과, 평가관리원 내 근무중인 관계수급인 직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규정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1항에 따르면 도급인 직원과 관계수급인 직원을 포함하여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

자를 두어야 하나, 평가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칙」 제9조 1항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평가관리원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만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64조 1항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게 되어있으나 「안전보건관리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2020년 12월 평가관리원과 수급업체 사업주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구축·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월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64조 1항 5호에서는 중대재해 또는 화재 등의 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시 관계수급인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규칙」 제31조의 적용범위는 평가관리원 직원 및 인근 주민으로 대상 범위가 상이하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축·운영,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비상사태 대비 계획·훈련 실시 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도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평가관리원 직원 및 관계수급업체 직원관련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의 규정등록 등을 요구받았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칙」의 개선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관리규칙」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규칙
<p>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p> <p>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산안법시행령 제 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p>	<p>제9조(안전보건관리 책임자)① 원장은 평가위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본부장급)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8.31>
<p>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p> <p>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 	<p>제30조(비상조치계획)</p> <p>① 원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8.31></p> <p>② 비상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직원, 인근 주민,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8.31></p> <p>제31조(피난 및 대응훈련)</p> <p>① 원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 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할 경우 개정·보완 하여야 한다. <신설 ‘20.8.31></p> <p>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 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신설 ‘20.8.31></p>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규칙
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흔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관계부서 의견

○○○○○○는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안전보건관리규칙」을 개정하고 기 마련된 매뉴얼에 대한 규정등록 등 평가관리원 직원과 관계수급인 직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은 평가관리원 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비상조치계획 및 피난·대응훈련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매뉴얼의 규정 등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2	감사자	☆☆●, ☆●□ (교차감사)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처분요구일	2021.09.	회신 기한일	2021.11. (통보일로부터 2개월)

권 고

제 목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필요

소 관 부 서 ☆☆☆☆☆☆☆☆☆단(●●●●●●)

조 치 부 서 ☆☆☆☆☆☆☆☆☆단(●●●●●●)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증진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2.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 필요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평가관리원 복무규정 제41조(건강진단), 제42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칙」 제34조(건강진단) 및 제35조(건강진단 결과 조치)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보건 업무는 ●●●●●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복무규정 및 안전보건관리규칙에 따른 임직원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건강수준과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KEIT 임직원 건강관리 체계적 지원계획(2020.12)³⁾”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에는 ‘대사증후군(고혈압, 당뇨 등) 유질환자 후속관리’ 등 임직원 개인별 유질환 소견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지원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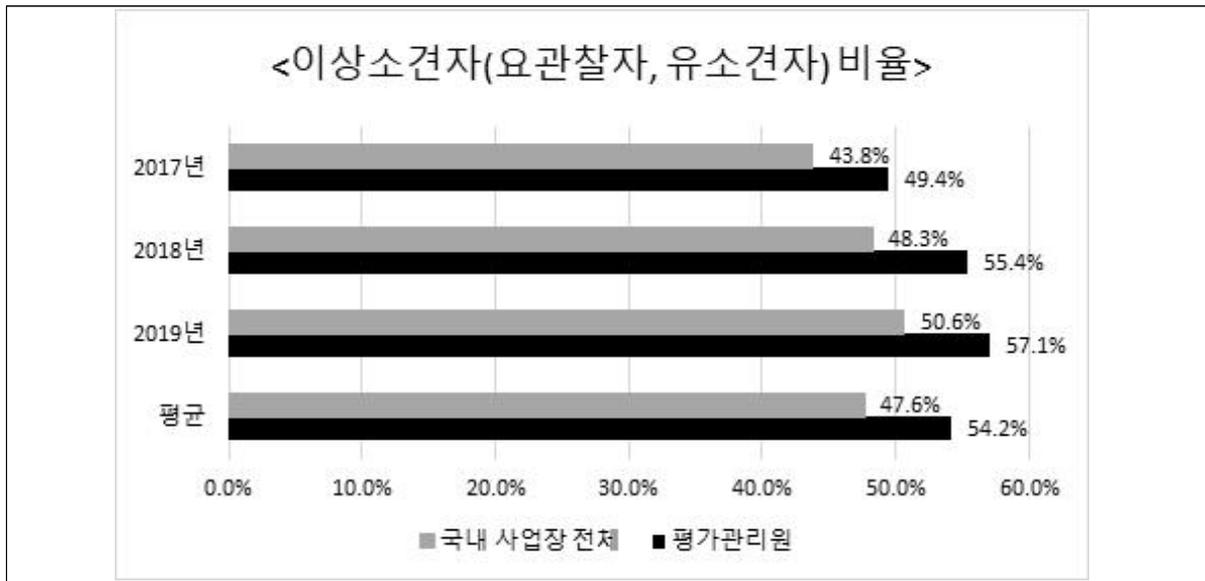
본 감사의 예비조사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⁴⁾’와 평가관리원 ‘임직원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표3]과 같이 최근 3년 평균 평가관리원 임직원의

3) 임직원의 건강지향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질병예방, 심리안전, 건강환경조성, 건강증진 기반구축 관점에서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지원

4)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전국 사업장에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근로자 직업병 예방 등 산업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보고서

이상소견자⁵⁾ 비율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비율보다 6.6%p 높았으며, 평가관리원 직원의 이상소견자 비율도 매년 증가('17년 49.4% → '18년 55.4% → '19년 57.1%)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3] 최근 3년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자(요관찰자, 유소견자) 비율 (2017~2019)



따라서,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수립된 ‘KEIT 임직원 건강관리 체계적 지원계획’내 ‘유질환자 적극적 지원사업’ 등 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여 직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상 소견이 있는 자를 이상소견자라고 하며 세부적으로 요관찰자, 유소견자로 분류되며, 요관찰자는 직업성 질병(진폐증, 소음성 난청, 유기화합물 중독등) 및 일반 질병(순환기·호흡기·내분비 질환 등)의 소견을 보여 건강관리상 관찰이 필요한 자이며 유소견자는 직업성 질병 및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임

관계부서 의견

●●●●●은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은 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대하여 “KEIT 임직원 건강관리 체계적 지원계획”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2. 관리운영직 대상 안전보건 교육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 필요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평가관리원은 「안전보건관리규칙」 제15조(안전보건교육)에 의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43조(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본 감사의 예비조사 기간 동안 평가관리원에서 청사 시설관리, 미화, 경비, 건축 및 운전을 담당하는 관리운영직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근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⁶⁾. 설문조사 대상은 25명이며 25명 모두 응답(응답률 100%)하였다.

안전보건 관련 교육 설문조사 결과는 [표4]과 같이 평가관리원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외에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19명)가 수강한 적이 있고, 24%(6명)가 없다고 응답했고,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지금 보다 강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40%(10명), 현재 수준으로도 적당하는 의견이 60%(15명)으로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안전보건

6) 설문조사는 시설관리, 경비, 미화, 건축 담당 관리운영직의 현장 위주 근무를 고려하여 2021.7.7(수)~7.12(월)까지 4일간 오프라인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는 방식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 25명의 담당 업무 및 인원은 시설관리 9명, 미화 7명, 경비 5명, 운전 3명, 건축 1명임.

관련 교육에는 “응급처치 전반”, “사고발생시 신고체계”, “직무별 안전사고 예방법”, “소방(현장교육)”, “전기계통 안전” 분야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21.3월에 수립한 “KEIT 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안)”에 따라 실시한 관리운영직(시설관리, 경비, 미화 담당)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표5]와 같이 4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석율 78.7%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밀폐작업 안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의 평균 참석률은 59.3%에 그치고 있고 운전직 관리운영직에 대한 교육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교육 횟수 및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4] 관리운영직(시설관리, 경비, 미화, 건축 담당) 대상 설문조사 결과 I(교육 관련)

설문 항목	여(與)	부(否)
안전보건교육 수강 여부	76%(19명)	24%(6명)
안전보건교육 강화 필요 여부	40%(10명)	60%(15명)

[표5] 관리운영직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2021년)

교육명	교육일자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수강자)	참석율
		대상직무	대상자		
미화업무 안전사고 예방 교육	2021.02.25	미화	7	7	100%
뇌심혈관질환 예방교육	2021.03.05	시설관리, 경비	22	22	10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2021.04.27	시설관리, 미화	22	14	64%
밀폐작업 안전교육	2021.05.17	시설관리	10	5	50%

근무중 안전사고 가능성, 작업 전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의식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표6], [표7]과 같이 응답자 모두 보통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고발생시 보고체계 등 후속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92%(23명)가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안전의식 및 사고 후속조치 체계 등에 대해서는 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관리운영직 대상 설문조사 결과 Ⅱ(안전의식 관련)

설문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근무중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32%(8명)	44%(11명)	24%(6명)
작업 전에 안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68%(17명)	20%(5명)	12%(3명)	-	-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안전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0%(20명)	12%(3명)	8%(2명)	-	-

[표7] 관리운영직 대상 설문조사 결과 Ⅲ(사고 후속조치 관련)

설문 항목	비교적 잘 알고 있음	모름
근무중 사고발생시 보고체계 등 후속조치 방법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계신가요?	92%(23명)	8%(2명)

아울러, 고정된 작업장이 있는 전기, 기계 등 시설관리 담당 관리운영직 9명에 대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8]과 같다. 작업장내 정리정돈은 잘되어 있으나 “소음·진동 발생 및 환기”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3명)가 “보통” 또는 “그렇다”고 답변을 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8] 시설관리 담당 관리운영직 대상 작업장 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작업장이 혼잡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는가?	-	-	-	22%(2명)	78%(7명)
소음·진동이 많이 발생하는가?	-	11%(1명)	22%(2명)	56%(5명)	11%(1명)
환기가 잘 되지 않는가?	-	-	33%(3명)	22%(2명)	45%(4명)

또한 [표9]와 같이 원내에 있는 지하 비트실, 특고압, 수배전 시설 등을 위험한 장소 및 설비로 응답하였으며 차량내 소화장비 및 작업장내 상비약(의료상자) 배치 등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안전보건 관련 제안 의견으로 외부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실시, 평가원 출구 도로의 안전 문제 해결 등을 응답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조치 필요성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표9] 관리운영직 대상 설문조사 결과 IV(개선 의견 등)

구 분	내 용
작업장(환경)내 위험한 장소 및 설비	지하 비트(배관설비 및 전선이 지나는 통로)실
	특고압, 수배전 시설
	눈, 비 올 때 일층 로비
	회사 진입 차량 교차로
작업장(환경) 내 개선 필요	차량 소화장비 배치
	지하 기계실 출입구가 계단으로 자재 반출입 및 통행에 지장이 많음
	젖은 우산 빗물제거기 교체 필요(바닥에 물기가 많이 고임)
	민원인이 직원 전용인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안전을 위하여 지하 입차 차단기 앞 쪽에 “임직원 전용” 또는 “외부인 입차 금지”라는 풋말 부착 필요
	작업장에 상비약(의료상자) 배치 필요

	작업장내 환풍기 이른 시간에 가동
	기계실 PIT 실내에 급배기 시설 설치 요망
	급배기용 자동 구리스 주입기 구입 필요
	청사 동측 대지 경계선 안전 난간대 설치 필요(낙상우려)
	사무실 3층 동편 출입구 문턱높이가 너무 높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 필요
안전보건 관련 제안	안전, 보건 관련 전문 외부기관에서의 교육 기회 부여 필요 (한전, LS등 전력 기업 및 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 등)
	출퇴근 시간에 평가원 출구 도로 부근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직원에게 공지 필요(택시 또는 가족 차량으로 인해 지체 및 사고위험 존재)

관계부서 의견

○○○○○○는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리운영직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관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단(○○○○○○장)은 관리운영직(운영직) 직무 관련 안전보건교육 과목 및 횟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권고)

② ☆☆☆☆☆☆☆단(○○○○○○장)은 관리운영직(운영직) 대상 안전보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4	감사자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처분요구일	2021.09.	회신 기한일	-

모 범 사 례

제 목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우수’ 달성에 기여**

관 계 부 서 ☆☆☆☆☆☆☆☆단(○○○○○○○)

내 용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평가관리원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실시된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안전경영체계 구축,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안전문화 확산, 사망사고 12년 연속 “0건” 달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

특히, ○○○○○○ ▼▼▼ ◆◆은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원내 안전 분야 전문위원과 상시 협의 및 자문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응 및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등 안전보건 관련 24건의 원내 규정을 제·개정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였다.

또한,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경영책임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였고 목표달성을 위해 상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보완하면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우수’ 달성에 기여한 ○○○○○○ ▼▼▼ ◆◆에 대해 타의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감사결과 모범사례

소 속	직 급	성 명
○○○○○○○	◇◆	▼▼▼
<p>제목 :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우수' 달성에 기여</p>		
추 천 내 용		
<p>□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한 노동부에서 주관한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평가결과* 두 단계 상승으로 강소형 준정부기관 39개 기관 중 최고점수 'A등급(우수)'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 최초평가 실시로 우리원 안전활동 수준에 대해 C등급 부여 - 전년도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개편* 된 평가항목 분석 및 실적관리로 평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4개 분야, 7개 영역 → ('20년) 4개 분야, 5개 영역 ○ 안전 수준 향상으로 12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재난·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실행으로 '20년 산업재해 Zero <p>□ 우리원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원의 특성에 맞는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경영책임계획(5대 추진전략, 20개 실행과제) 및 안전경영중장기 계획(3대 전략목표, 10개 전략과제) 수립 - 안전활동 실행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중점사항 심의·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안전 관련 상위법령* 및 정부정책에 대한 원내 적합성 검토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규칙, 산업안전관리 매뉴얼 등 총 24건의 규정 재·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 관련 법령사항 수급업체 근로자 및 임직원에게 상시 공유 및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 - PDCA 운영체계를 통해 개선과제 도출 및 지속적인 관리·보완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S-MS)* 인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원의 자율적 안전관리·운영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처리 		